

『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과 계속해서 변화하는 작전(안보)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조문 구체화(안 제2조)
 -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- 협의회 분야별 간사 삭제 및 추가(안 제3조)
 - 총무 담당간사 : 삭제
 - 경찰 담당간사 : 구미경찰서 경비과장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(안 제6조)
 - 「민방위기본법」 : 제6조 → 제7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,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예비군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

-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지침 조례 권장안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변화하는 작전(안보)환경에 대응하여 구미지역의 통합방위 능력을 제고하는 사항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